

#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이숙자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935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8월 11일  
발 의 자: 이숙자 의원(1명)  
찬 성 자: 강석주, 곽향기, 김영철,  
김원태, 김재진, 김태수,  
김혜영, 남궁역, 남창진,  
민병주, 박춘선, 서상열,  
신복자, 옥재은, 유만희,  
유정인, 윤영희, 이봉준,  
이상욱, 이종태, 이종환,  
이효원, 전병주, 최민규,  
황철규 의원(25명)

## 1. 제안이유

- 「병역법」 제82조의3에 병역명문가의 선정 요건 및 절차가 법률로 명확히 규정됨에 따라, 조례의 병역명문가 정의를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하고자 함.
- 또한 예우대상자 요건 중 ‘병역명문가증 발급’ 조건을 삭제하고, 법령에 따라 선정된 사실 자체를 기준으로 하여 대상자를 규정함으로써, 운영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병역명문가의 정의를 「병역법」 제8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선정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병무청장이 선정한 가문으로 정비함(안 제2조제1호)
- 나. 예우대상자 요건에서 ‘병역명문가증 발급’ 요건을 삭제하고,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사람 중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함(안 제2조제2호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병역법」

##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###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“병역명문가”란 「병역법」 제8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병무청장이 선정한 가문을 말한다.
2. “예우대상자”란 병역명문가로 선정되어 서울특별시(이하 ‘시’라 한다)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병역명문가”란 3대(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)가 모두 <u>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「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」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.</u></p> <p>2. “예우대상자”란 <u>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.</u></p> <p>3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“병역명문가”란 「<u>병역법 제8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병무청장이 선정한 가문을 말한다.</u></p> <p>2. “예우대상자”란 <u>병역명문가로 선정되어 서울특별시(이하 ‘시’라 한다)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.</u>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

#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### 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병역법」 제82조의3에 병역명문가의 선정 요건 및 절차가 법률로 명확히 규정됨에 따라 현행 같은 조례의 병역명문가 정의<sup>1)</sup>를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하여 **법령과 조례간 정합성을 확보**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서울시 재정지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### 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과
재정분석과장	이 선 희
추계세제팀장	김 중 헌
추계분석관	손 제 승

☎ 02-2180-7953
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**※ 이 자료는 의안 발의 참고용입니다.**

1) [상위법령 개정에 의한 추가제정소요 영향 검토] 통상 정의규정의 개정은 조례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므로, 해당 정의 변경에 따른 추가제정소요를 보다 자세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

⇒ 각종자료 등 검토결과 해당규정은 현행 같은 조례의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명시(조건규정→법령에 따라 선정된 사실 자체 규정)하였을뿐 **제정소요 요소** 중 하나인 기존 **예우대상(Q)**의 변경, 증가, 감소 등에 미치는 영향은 없어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